

업종	구분	내용
공공용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공공용 해당업종 사용자 ○ 농업협동조합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 부속병원(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시장이 정하는 수용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어린이집, 놀이방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 사용자제외)
공중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시장이 정하는 수용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어린이집, 놀이방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 사용자
산업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두채재배업소

주1 가정용 세대분할 및 업종조정 등은 「서울특별시수도조례」를 적용한다.

32. 서울特別市世宗文化會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4時 49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特別市世宗文化會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같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參 照)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8. 4. 9.

문화교육위원회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4.1. 서울특별시  
시장

나. 회부일자 : 1998.4.2.

다. 상정일자 : 1998.4.6.(제103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다. 심사및의결일자 : 1998.4.6.(제103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이상진 문화국장)

가. 제안사유

'93년이후 인상요인이 누직된 세종문화회관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운영상 미

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사용료 납부기한을 대강당의 경우 사용예정일 60일전으로 변경하고, 회관과 공동주관시 별도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연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표금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구체화함.

○ 대관시설사용신청수수료(950원)를 우리시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고, <별표> 중 대·소강당 등 30개 항목에 대한 사용료를 평균 22.7% 인상하고, 대·소강당 동시통역시설사용료 등 8개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무선 마이크 등 29개 항목을 신설하고 <별표>의 비고부분 일부를 수정함.

다.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27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 계증명발급확인사항(22종)-생략

2. 계증명발급확인사항(12종)-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 김종식)

○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93년이후 인상요인이 누직된 세종문화회관

<p>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p> <p>◎ 다음은 각 개정조문에 대한 의견은</p> <p>○ 먼저 제9조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회관과 공동주관으로 공연물을 공연하는 자에 대해서는 회관장이 정한 별도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공연의 성격에 따라 대표금액의 100분의 25 범위내의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토록 함으로써 그 동안 수익배분상의 선명한 정산이 곤란하였던 점과 예산부족으로 기획공연에 지속적인 투자가 어려운 회관의 여건을 해소하였는바, 이는 사용료 징수의 현실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음.</p> <p>○ 회관의 대관시설 사용신청시 조례에 근거없이 550원의 수수료를 징수해 오던 것을 제14조를 신설함으로써 조례에 그 근거를 두었으며, 수수료액은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 근거하여 950원으로 조정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임.(관련법령 2)</p> <p>○ 다음은 본 조례의 &lt;별표&gt;와 관련된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소강당 사용료 등 30개 항목에 대한 사용료를 평균 22.7%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93.3.18.이후 소비자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국립극장 또는 예술의 전당과 비교해 보면 세종문화회관의 사용료를 100으로 보았을 때 국립극장은 142, 예술의 전당은 264로 세종문화회관의 사용료가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 할 것임.</p> <p>또한 무선마이크 등 29개 항목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새로 마련하였으며, 사용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동시통역시설 등 8개 항목을 사용료 징수 대상에서 삭제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p> <p>4. 질의답변 요지 생략</p> <p>5. 토론요지 생략</p> <p>6. 심사결과</p>	<p>참석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가결</p> <p>○議長 文一權 그러면 서울特別市世宗文化會館 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文化教育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p> <p>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p> <p>(參 照)</p> <p>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6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0일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사용료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p> <p>제9조제2항·제3항을 제4항·제5항으로 각각 하고 동조에 제2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②사용승인을 받은 자와 회관이 공동주관으로 공연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관장이 정한 별도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③공연의 성격에 따라 회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표금액 100분의 25 범위내의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p> <p>제9조제5항(중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⑤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p> <p>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p>
---	--